

관리번호 : CJA0000826 문서번호 : 771885 성명 : 강대곤 외 1인 쪽번호 : 342-348

위 두 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화 4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이 언도한 피고인 두 명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두 명이 공소 신청을 함에 따라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조전복장(早田福藏)의 관여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인 두 명을 각 벌금 5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는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청년동맹 강령 30통(소화 4년 복압(覆押) 제180호-1)은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두 명은 소화 2년 11월 20일경 경상남도(慶尙南道) 울산군(蔚山郡) 동면(東面) 방어리에서 개최된 울산군 사회단체 간담회의 자리에서 울산청년동맹(蔚山靑年同盟)의 창립이 결의된 후, 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되자 공모한 후 동년 12월 8일부터 다음날 9일까지의 기간에 울산군 울산면 성남동 김정국(金正國)의 집에서 청년동맹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1. 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
2. 조직되지 않은 조선 청년 대중의 공고(鞏固)한 조직의 촉구
3. 조선 청년 대중을 계급적, 민족적으로 교양훈련을 기한다.

당면 정책으로서,

1. 조선민족의 전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전 민족적 단일당(單一黨) 수립
2. 단일당의 수립을 위해 신간회(新幹會)를 적극적으로 지지
3. 청년남녀의 언론집회와 결사, 출판의 자유
4. 조선민족을 특수하게 취급하는 제령과 기타 악법안의 철폐
5. 각 학교의 교수(敎授)용어에 조선어 사용제(使用制) 확립
6. 청년남녀의 인신매매의 사실상의 철폐
7. 봉건적 악습, 형식적 허례 등의 철저한 타파
8. 일체(一切) 배신(拜神) 사상 근절, 미신타파, 일체(一切) 노예사상 박멸의 사항에 관하여,

또 토의안으로서, 조직에 관한 건, 교양에 관한 건, 여성운동에 관한 건, 소년운동에 관한 건, 신간회 지지의 건에 대하여 그 이유 및 방법에 관한 각각의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문서를 저술하였다. 이어서 동월 9일 울산군 하상면 병영청년회관에서 훗날 반포할 목적으로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위 문서 70부(소화 4년 복압(覆押) 제180호-1)를 등사, 출판하였다. 피고인 강대곤(姜大鵬)은 그 후 소화 3년 5월 16일 울산군 울산면 북정동 통도사 포교당에서 전기(前記) 울산청년동맹 창립총회가 열릴 때 원심 상(相) 피고인 권우락(權又洛)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창식(劉昌植) 외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동인들에게 위 인쇄물을 반포하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펴보건대, 피고인 강대곤은 당 공판정에서 판시와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자백하고, 피고인 조형진(曹亨珍)은 판시 문서의 저술을 한 일은 있으나 그 출판에 대해서는 경찰관현의 허가를 얻어 이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강대곤의 위 자백과 예심판사의 증인 대시철지조(大柿鐵之助)에 대한 신문조서에, 자신은 대정 13년 이래 울산경찰서 고등계 주임으로 소화 3년 5월 16일 울산 읍내 통도사 포교소에서 개최된 울산청년동맹 창립회에 임석(臨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강대곤이 권우락이란 자로 하여금 회원에게 강령 등을 열기(列記)한 문서(소화 4년 복압(覆押) 제180호-1)를 배부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권우락으로부터 위 총회 개최의 출원이 있었으나 어떠한 문서의 첨부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 문서의 출판 또는 배부에 대해서는 물론 허가를 준 일이 없어 이 문서는 이를 차압하였다는 내용의 공술기재에 비준다면 판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며, 피고인 조형진의 위 변명은 이를 배척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두 명의 소위 중 허가 없이 출판된 판시 문서 저술의 점은 융희 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그 출판의 점은 동조(同條) 제2항 제1항 제4호에, 피고인 강대곤의 판시 문서 반포의 점은 동조(同條) 제1항 제4호에 각 해당하는바, 위 저술, 출판, 반포는 순차적으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두 명에 대해서 각 형법 제54조 제1항 후단 제1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 강대곤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반포에 대한 형에, 피고인 조형진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출판에 대한 형에 따라 각 그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주문과 같이 처단한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형법 제18조 제1항 제4항에 따른다. 그리고 압수된 청년동맹 강령이라 기재된 문서(소화 4년 복압(覆押) 제180호-1)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문서를 출판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몰수한다.

피고인 두 명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려고 하

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2조에 따라 피고인 두 명에 대해서 무죄의 언도를 한다.

피고인 조형진이 판시 문서를 반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나 동 피고인에 대한 판시 출판의 점과 건련범(牽連犯)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주문에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즉, 피고인 두 명의 공소를 모두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